

7. 法人稅法 施行令中 改正令

大統領令 第12,995号 1990. 5. 1公布

법인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제34조제2항제2호중 “근속연수”를 “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”로한다.
 제124조의 2제7항본문중 “불분명한”을 각각 “분명하지 아니한”으로 하고,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

$$\text{양도가액} \times \frac{\text{취득당시의 기준시가}}{\text{양도당시의 기준시가(소득세법시행령제115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말한다)}}$$

2. 양도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

$$\text{양도가액} \times \frac{\text{취득당시의 기준시가}}{\text{양도당시의 기준시가(소득세법시행령제115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말한다)}}$$

부 칙

① (시행일)이 영은 1990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적용례)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.

③ (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경과조치)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.

$$\text{1990년 1월1일을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} \times \frac{\text{1990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}}$$

◇法人稅法施行令 改正理由 및 主要骨子

法人이 土地·建物を 讓渡함으로써 발생하
 는 所得에 대한 特別附加稅의 課稅標準을
 計算함에 있어서 取得價額 또는 讓渡價額중
 하나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는 地
 方稅法上的 課稅時價標準額을 基準으로 取
 得價額 또는 讓渡價額을 換算하던 것을 앞
 으로는 地價公示 및 土地 등의 平價에 관한 法律
 에 의한 公示地價를 基準으로 換算하도록 함
 으으로써 特別附加稅의 課稅標準을 現實化하도
 록 함.(令 第124條의2第7項第1號 및 第2號)